

대학원 학칙 개정 (안)

1. 개정사유

출석인정방법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, 성적평가 방법 문구(원칙) 수정

2. 주요골자

- 1) 출석인정방법 변경(보강제도 삭제→지각제도) : 제32조
- 2) 성적평가 시 원칙평가방법 수정(상대평가→절대평가) : 제33조

3.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 32 조(출석인정) ① 학습요구시간이 부여된 회차(강)의 출석은 주차별 강좌개시일로부터 2주내에 수강하면 출석이 인정된다. 단, 13주부터의 출석인정기간은 학기종료일로 한다.</p> <p>② 보강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이 기간 동안 수강한 주차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학생의 오지출장, 장기입원, 상고 등 개인적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단, 출석인정처리는 학기별 수업시간의 4주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④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	<p>제 32 조(출석인정) ① <현행></p> <p>② 출석인정기간 외에 수강할 경우, 지각으로 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<현행></p> <p>④ <현행></p>	자구수정
<p>제 33 조(성적평가) ①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수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P/F로 평가할 수 있다.</p>	<p>제 33 조(성적평가) ① ----- 절대평가-----, ----- 상대평가-----</p>	자구수정

4.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① 대학원 학칙 제32조(출석인정)는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.